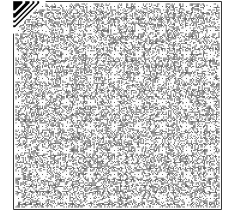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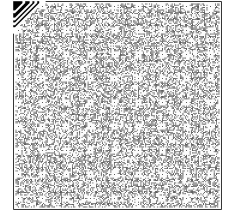
제목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장의 허가) 규정에 의해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시설 등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임시 산정(가할당)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가할당 배출구를 가진 총량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할당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할당 재산정 절차 ==

- 1) 가할당 총량관리사업장에 실적자료 제출 안내공문 발송(붙임 1, 2)
- 2) 사업장이 허가기관에 가할당 배출구의 실적자료 제출
- 3) 지자체는 할당검토서 작성하여 환경부로 할당협의
- 4) 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에서 총량허가증 재교부

- 붙임 1. 가할당 재산정 자료 제출 안내 발송 공문(참고 양식) 1부.
2. 총량관리사업장 할당신청서(양식)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 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 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 광주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북부환경관리과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푸른하늘기획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현민** 행정사무관 **최재웅** 과장 전결 2021.2.4. **차은철**

협조자 파견직 **이선중**

시행 대기관리과-646 (2021. 2. 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5층)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908 팩스번호 044-201-6915 / light@me.go.kr / 대국민 공개